화성 남양뉴타운 우미 린 에듀하이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357-320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3년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1.21.(금)	26.01.07.(수)	26.01.12.(월)	26.01.15.(목)	26.01.19.(월)	26.01.22.(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 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07.(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274**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564**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084.9955A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1.12.(월)	26.01.15.(목)	26.01.19.(월)	26.01.22.(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4-1)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12.10.**)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적용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8 (남양뉴타운 B16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24층 6개동 총 556세대 중 잔여 176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동·호별)	
					동	호
2025910274	01	084.9955A	84A	176	101	103, 203, 204, 401, 403, 404, 504, 601, 604, 703, 803, 901, 1101, 1201, 1204, 1301, 1403, 1404, 1601, 1603, 1604, 1701, 1704, 1801, 1903, 1904, 2404
					102	201, 204, 301, 303, 304, 401, 501, 503, 504, 601, 603, 703, 804, 901, 904, 1001, 1004, 1101, 1103, 1303, 1501, 1504, 1704, 1801, 1803, 1904, 2001, 2004, 2201, 2203, 2204, 2301, 2304
					103	101, 104, 201, 204, 304, 401, 403, 501, 504, 601, 603, 604, 704, 801, 804, 903, 904, 1101, 1104, 1201, 1301, 1401, 1701, 1703, 1704, 1803, 2101, 2203, 2301
					104	101, 104, 204, 301, 303, 304, 401, 403, 501, 503, 601, 603, 701, 703, 704, 803, 804, 903, 1004, 1203, 1204, 1303, 1503, 1801, 1901, 1904, 2004, 2101, 2204, 2401, 2403, 2404
					105	101, 104, 201, 303, 401, 404, 504, 701, 704, 801, 904, 1001, 1103, 1104, 1401, 1601, 1603, 1604, 1903, 2001, 2103, 2201, 2204, 2304
					106	201, 301, 401, 501, 503, 504, 701, 804, 1003, 1101, 1103, 1204, 1303, 1304, 1401, 1404, 1504, 1604, 1704, 1801, 1804, 1901, 2004, 2103, 2104, 2201, 2203, 2204, 2303, 2401, 2403
	합 계			**17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 (라인)	층별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5%)	2차(15%)	3차(15%)	4차(15%)	입주 시
								계약 시	2026.02.24.	2026.07.10.	2026.12.10.	2027.06.10.	2027.12.10.	
84A	176	101동 1,3,4호 102동 1,3,4호 103동 1,3,4호 104동 1,3,4호 105동 1,3,4호 106동 1,3,4호	기준층	95	97,302,000	361,098,000	458,400,000	10,000,000	13,0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160,600,000
			5~9층	45	97,302,000	351,998,000	449,300,000	10,000,000	12,5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157,600,000
			4층	11	97,302,000	342,898,000	440,200,000	10,000,000	12,1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54,100,000
			3층	9	97,302,000	333,798,000	431,100,000	10,000,000	11,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51,100,000
			2층	9	97,302,000	324,698,000	422,000,000	10,000,000	11,1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147,700,000
			1층	7	97,302,000	315,598,000	412,900,000	10,000,000	10,7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44,60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 금 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약금(모계좌)	iM뱅크	504-10-640785-2	코리아신탁(주)
	중도금·잔금(가상계좌)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해야 함
- 이후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개별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기 관리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관련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예시 : 101동 1101호 → 1011101홍길동)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가능날짜는 별도 통보 예정이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약식표기	구분	금액	비고
84A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4,600,000	-

※ 발코니 확장의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5.11.2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약식표기	선택안	시스템에어컨 설치부위	금액	비고
84A	3대	거실, 주방, 안방	5,900,000	LG전자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900,000	

※ 시스템에어컨의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5.11.2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가구 및 인테리어	현관	중문	1,600,000	3연동 슬라이딩
	거실	광폭강마루	700,000	바닥 전체
		타일+광폭강마루	1,700,000	타일(거실, 주방, 팬트리, 복도)+광폭강마루(안방, 침실, 드레스룸)
		대형 아트월	1,200,000	-
		고급거실특화	1,600,000	거실, 복도 : 시트알판+간접조명(픽처레일 일체형)
		고급조명특화	3,300,000	현관 : 간접조명+라인등박스 거실 : 직간접조명 4면(디밍·색온도조절 기능 포함) 주방 : 원형직부등(3EA)+우물천정(루버, 2면 간접조명) 안방 : 사각직부등(디밍·색온도조절 기능 포함)
	주방	아일랜드장	1,500,000	아일랜드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멀티콘센트(사각)
		고급주방특화	3,000,000	※ 아일랜드장 선택 시 가능 세라믹타일(상판+벽부+아일랜드장 상판)+상부장 하부 간접조명+하부장 우드패턴(아일랜드장 포함)
		주방팬트리	1,600,000	시스템선반+센서조명+슬라이딩도어 ※ 주방팬트리 선택 시 현관-주방 통합형 팬트리 선택 가능
		주방장식장1	2,400,000	※ 고급주방특화 미선택 시 가능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부)+시트알판+글라스상부장(상하부 간접조명)+하부수납장
		주방장식장2	2,600,000	※ 고급주방특화 선택 시 가능 세라믹타일(상판+벽부)+시트알판+글라스상부장(상하부 간접조명)+하부수납장
	안방	드레스룸	3,500,000	입식 파우더장+유리도어+세미형 시스템선반 ※ 화장대 포함
	침실	붙박이장	1,200,000	붙박이장(미니 파우더형) ※ 1개소 기준
	욕실	공용욕실 고급특화	2,300,000	대형타일+욕실장 하부 간접조명+복합환풍기+고급세면대+고급액세서리+비데일체형 양변기
		부부욕실 고급특화	2,200,000	대형타일+욕실장 하부 간접조명+복합환풍기+고급세면대+고급액세서리
가전	광파오븐	삼성전자	600,000	-
		LG전자	900,000	-
	인덕션	삼성전자	900,000	-
		LG전자	1,100,000	-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1,800,000	-
		LG전자	1,400,000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5.11.2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금액, 납부계좌,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납부일정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시	**2026.07.10.**	**입주 시**
iM뱅크	계약금(모계좌)	504-10-640784-5	코리아신탁(주)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80%
	중도금·잔금(가상계좌)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포함) 관리계좌(모계좌)로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 1101호 → 1011101홍길동)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서에 준함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음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15.(목) ~ 2026.01.24.(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1.1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서류제출 일시 : **2026.01.19.(월) 10:00~16:00** [서류접수일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별도 안내드린 순번별 예비입주자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자 중 미계약 발생 시 이후 순번별 예비입주자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당첨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당첨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당첨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인 위임 불가
		○	위임장	본인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1.22.(목)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대리인 위임 불가)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무통장 입금증
	○		전자수입인지	-	• 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 시에 첨부 - 아파트 분양대금 1억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사업주체가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인 위임 불가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며,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첨 및 계약 임의 해지 시,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상호	㈜우미산업개발	우미건설㈜	코리아신탁㈜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3층 303,304호(우산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2층(우산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법인등록번호	200111-0016547	205211-0001385	110111-2937831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hn1.lynn.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4-1**

■ **분양 문의 : 031-357-3200**